



정보나눔의 문화만들기

정보 라이선스 2.0

해설서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약관 유형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이 라이선스가 채택된 저작물은 이용자가 자유로이 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저작인접물 작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영리 목적으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 등을 창작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이용자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저작인접물 작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으며, 편집저작물과 저작인접물 작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적 이용만이 아니라 영리적 목적의 이용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

이용자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으며, 편집저작물과 저작인접물 작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안내문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가진 사람만 자신의 저작물에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허위로 채택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나눔의 문화만들기

정보 **공유** 라이선스 2.0

해설서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 라이선스

2005년 8월, 정보공유연대 IPLeft,
이 해설서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이 적용됩니다.
출처와 저작자를 명시하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이 해설서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http://www.freeuse.or.kr/license/2.0/gg/>)

이 해설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후원으로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제작하였습니다.

정보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발표하며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당연한 듯 자유롭게 해왔던 행위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요구에 따라 드라마 팬클럽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라간 뉴스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이 도모해야 할 권리와 이용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지점은 어디인가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 음악의 이용이 저작권에 의해 금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인터넷에 배경음악 돌려주기' 프로젝트 (<http://freebgm.net>)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창작자들,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세상에 선을 보인 이후,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벌써 많은 분들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자신의 저작물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걸음을 떼었을 뿐이며,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라이선스 1.0 약관의 내용은 여전히 법적인 문제와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의 꼼꼼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약관의 내용과 체계에 있어 1.0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정보공유라이선스 상징물, 해설서, 플래시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추가 작업이 있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함께 한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2005년 8월
정보공유연대 IPLeft



차례

서문	3
제1장. 정보공유라이선스 소개	5
1. 정보공유라이선스란 무엇인가	6
2.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필요성	7
3.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9
4. 저작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12
5. 유형별 간략 라이선스	14
6. 라이선스 심볼의 의미	19
7. 'No Copyright, Just Copyleft' 와의 차이점	20
8.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누가 채택할 수 있나	21
9. 소프트웨어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나	21
제2장.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방법과 표시 방법	23
1. 내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하기	24
2. 정보공유라이선스 선택 방법	25
3.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 방법	28
4. 메타데이터	32
5. 채택시 유의사항	34
제3장.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약관 해설	36
1. 개요	37
2.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주요 내용	38
3.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조문별 해설	48
제4장.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약관 전문	59
1.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60
2.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65
3.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70
4.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 개작금지	75
정보공유연대 IPLeft 소개	80

제 1 장

정보공유라이선스 소개



1. 정보공유라이선스란 무엇인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적 창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정보 나눔의 문화를 넓히기 위해 2002년부터 정보공유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이러한 운동의 결과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일종의 약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읽게 되는 약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약관이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둔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저작물이용에 관한 계약 내용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정보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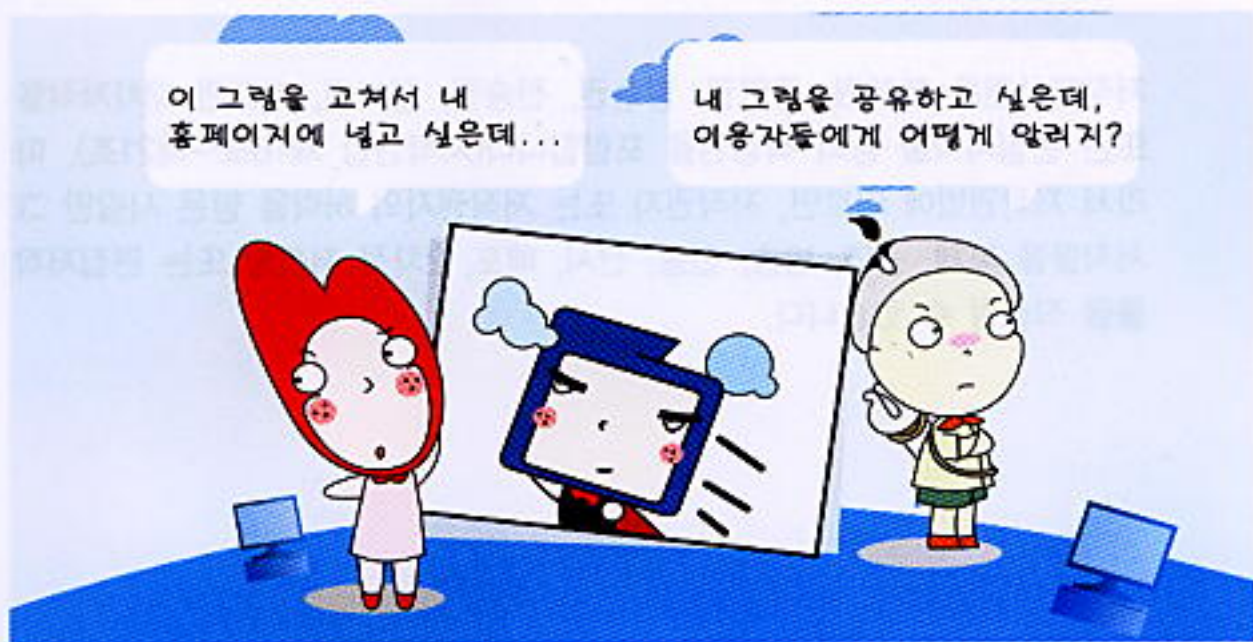


2.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필요성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까 우려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용자는 저작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저작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글 또는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는 학자와 예술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만 밝혀준다면 저작물의 복제, 배포 등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상업적 이용만 아니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토대로 한 2차 저작을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저작자라도 자신의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만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를 가진 저작자는 그 의사를 표현할 적당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작물을 무료로 나누려는 저작자들이 있고,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이용자가 있더라도 이들을 연결시킬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바로 그러한 저작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편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참고 :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별도로 관청에 등록할 필요없이 창작을 완료한 때에 창작자는 저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다시 재산적 가치와 양도 여부에 따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괄하는 권리입니다.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저작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의미합니다(동법 제12조 제1항).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또는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입니다(동법 제13조 제1항).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16조~제21조).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이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범위는 정보공유라이선스 4가지 유형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가 채택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비영리적 목적으로는 저작물 복제, 공연, 전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적 사용은 금지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유형

	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저작권자 허락 필요)
영리적 이용 허용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영리·비영리 불문 자유이용 허락, 개작도 허용)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영리·비영리 불문 자유이용 허락, 단 개작은 금지)
영리적 이용 금지 (저작권자 허락 필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비영리적 이용만 허락, 개작 허락)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 (개작이 아닌 비영리적 이용만 허락)



■ 저작권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면 그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은 일부 또는 전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여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한 범위에서 저작권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누군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채택했다면, 비영리적인 저작물 복제, 공연, 전송 등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하라고 청구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적인 복제나 배포, 전송 행위 등에 대하여는 허락한 바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중지할 것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저작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첫째, 자신의 저작물 이용 허락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저작권법하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저작자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조건이나 이용허락을 한 범위 등을 그때 그때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일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령, 저작자가 자신은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였지만,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라이선스(약관)를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영리적 이용을 불허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제2 창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쓸 만한 정보는 유료정보일 때가 많습니다. 유료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때에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창작자들의 제2 창작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는 저작자들이 많아지면, 저작자 스스로도 제2 창작에 필요한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창작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5. 유형별 간략 라이선스

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이용자는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고
- ②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할 수 있으며
- ③ 실연, 음반 제작 또는 방송물 제작에 이용할 수 있고
- ④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하고
- ②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하며
- ③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없고
- ④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이용자는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고
- ②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할 수 있으며
- ③ 실연, 음반 제작 또는 방송물 제작에 이용할 수 있고
- ④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하고
- ②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하며
- ③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없고
- ④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안돼요



휴대폰 벨소리
판매하면... 안되나?



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이용자는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고
- ②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할 수 있으며
- ③ 실연, 음반 제작 또는 방송물 제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하고
- ②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하며
- ③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없고
- ④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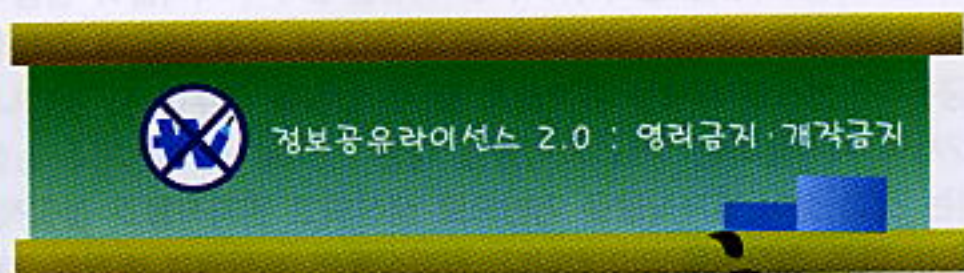
라.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

이용자는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고
- ②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할 수 있으며
- ③ 실연, 음반 제작 또는 방송물 제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하고
- ②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하며
- ③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없고
- ④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는
원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영리 사용이나 개작은
먼저 협의해요





왜 4가지 유형인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4가지 유형은 영리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저작권자는 4가지 유형 중에 자신의 의도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리적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는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이용을 허락하지만 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보호받겠다는 창작자를 고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비영리 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 제작물을 비영리적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상업방송국과 같은 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일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비영리 사회단체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더라도 '영리금지' 유형을 채택하면 영리적 기업에게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는 2차적 저작물이 원창작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우려 때문에 원창작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채택을 주저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참고로 2차적 저작물이란 어느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하는 것과 같이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생산되고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다른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별개로 2차적 저작물의 창작자도 자신이 창작한 것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저작물이 또 다른 저작물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 자유롭게 허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2차적 저작물이 원창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변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한번 공표된 저작물은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창작자가 이것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때 원창작자의 허락을 말도록 하는 라이선스를 채택하면 됩니다.

6. 라이선스 심볼의 의미



1) 허용

영리, 비영리적 이용과 개작까지도 모두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영리금지

영리적인 이용은 금지됩니다.
다만 비영리적 이용이나 개작은 허용됩니다.



3) 개작금지

영리적인 이용은 허용되지만,
개작은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4) 영리금지 · 개작금지

영리적인 이용과 개작이 금지되나,
그 외 비영리적 이용은 허용됩니다.



7. 'No Copyright, Just Copyleft' 와의 차이점

현재 'No Copyright, Just Copyleft' 문구를 표시한 홈페이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나의 저작물을 공유 하겠다' 라는 추상적인 선언일 뿐,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이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공유된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등, 저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남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의무는 무엇인지 등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left (카피레프트) 역시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GPL (General Public License) 이라는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운동입니다. 막연한 정보공유의 선언이 아니라,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 확산될 때 진정으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이 넓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8.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누가 채택할 수 있나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만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 창작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그 표시를 믿고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은 타인의 저작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들을 편집하여 저작물을 만들거나, 다른 저작물을 번역, 편곡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노래로 부르거나(실연), 음반을 만들기도 하고(음반), 방송물을 제작합니다(방송). 이처럼 타인의 저작물과 관계가 있는 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 저작인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려면, 관계된 타인에게 라이선스 적용에 관한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라이선스를 채택하면 이용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라이선스를 채택한 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9. 소프트웨어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나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또는 GNU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을 채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설명서(매뉴얼)에 대해서는 GNU GFDL (General Free Documentation License)을 채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GNU GPL: <http://www.gnu.org/licenses/gpl.html>

GNU LGPL: <http://www.gnu.org/licenses/lgpl.html>

GNU GFDL: <http://www.gnu.org/licenses/fdl.html>



궁금합니다

■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나요?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등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성명이나 필명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성명 등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표기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 중 재산권인 저작재산권만 규정할 뿐이고,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므로, 저작자가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공표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을 일부러 찾아서 기재하는 것도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나요?

저작권에는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등의 저작재산권과 더불어,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도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원저작물을 기초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과는 달리, 원저작물 자체의 내용 등을 변경하거나 제목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방법과 표시 방법



1. 내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하기

당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여 다른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라이선스 선택

정보공유라이선스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모든 범위에서 허용하는 형 (허용), ② 영리적 이용은 금지하는 형(영리금지) ③ 번역, 편곡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을 금지하는 형 (개작금지) ④ 영리와 개작을 금지하는 형(영리금지·개작금지). 이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2. 정보공유라이선스 선택 방법을 참조하세요.

둘째. 선택한 라이선스 표시하기

선택한 라이선스를 올바른 방법으로 저작물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채택한 라이선스가 어떤 내용인지 다른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만 그 다른 사람은 당신의 의도에 맞게 당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 3.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 방법을 참조하세요.

셋째. 메타데이터를 붙여주세요.

메타데이터란 당신이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된 사실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지입니다.

☞ 4.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세요.

넷째. 채택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세요.

저작권자만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5. 채택시 유의사항을 참조하세요.

2. 정보공유라이선스 선택 방법

1) 먼저, 정보공유라이선스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좌측 메뉴에서 '내게 맞는 라이선스 선택'을 클릭합니다.



2)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것인지, 개작을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한 다음, 저작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페이지 하단의 '라이선스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방법

- 내게 맞는 라이선스 유형 선택
- 저작물별 라이선스 채택 방법
- 채택시 유의사항
- 제작에이비전

→ 내게 맞는 라이선스 유형 선택

1. 저작물(글, 사진, 소리파일, 동영상 등...)의 영리적인 사용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영리적 이용이란 상업적 이익이나 공전적인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또는 영리적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적인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저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영리적인 이용을 허락하고 싶습니다.
☐ 영리적인 이용을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의 개작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개작이란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 원 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물(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물의 개작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개작을 원하는 이용자는 원 저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개작을 허락하고 싶습니다.
☐ 개작을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3. 저작물 정보 입력

• 저작자
 • 저작물 종류

• 저작물 제목
 • 저작물 소개

• 원본 URL
 • 저작년도
 • 저작권자

3.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 방법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표시는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라는 문자와 약관 유형을 병기하거나, 정보공유라이선스 배너와 심볼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라이선스 표시를 할 때에는 저작권자가 한 표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 제공하는 배너와 심볼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선스를 표시할 때, 아래의 배너와 심볼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택하려는 저작물이나 매체에 적합하도록 색상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너 : 정보  라이선스

심볼 :



: 허용



: 개작금지



: 영리금지



: 개작금지 · 영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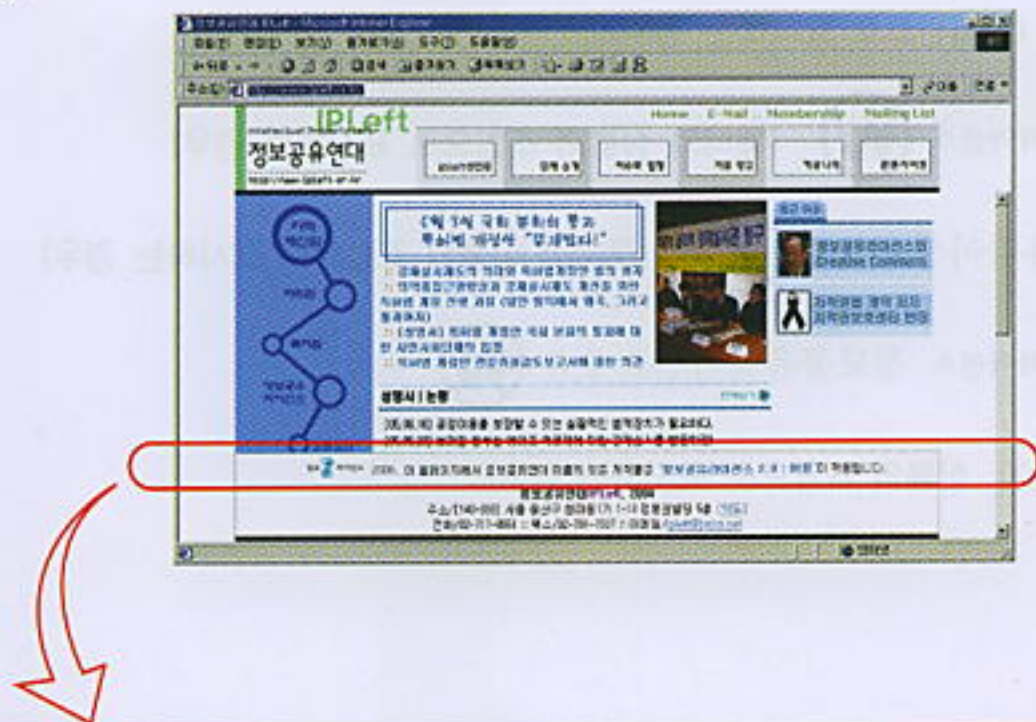
※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례

- ① 2005년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경우)
- ② 정보  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배너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경우)
- ③  (심볼만으로 표시하는 경우)
- ④ 정보  라이선스  (배너와 심볼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경우)
- 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문자와 심볼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경우)
- ⑥ 정보  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배너, 문자, 심볼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경우)

※ 웹 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려는 웹페이지 혹은 저작물 옆에 정보공유라이선스 배너를 부착하고, 선택한 라이선스를 링크하시면 됩니다.

예)



정보  라이선스 2005. 이 홈페이지에서 정보공유연대 이름의 모든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이 적용됩니다.

위 그림에서 정보  라이선스 에 "http://freeuse.or.kr/license/2.0/hy/"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 인쇄 저작물에 표시한 사례

인터넷 콘텐츠가 아닌 경우, 채택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명시하고, 라이선스의 인터넷 주소를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예)



월간 <네트워크>의 저작권은 각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에 따라, 출처와 저작자를 명시하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의 작성, 편집물의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월간 <네트워크>와 협의해야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 <http://freeuse.or.kr/license/2.0/yg/>)

4. 메타데이터

온라인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을 표시할 때는 메타데이터를 붙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 메타데이터란

자신의 온라인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붙이는 정보공유라이선스 삽입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부분과 기계(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은 라이선스 배너 이미지와 선택한 라이선스의 약관 페이지에 대한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배너 이미지를 통해 해당 저작물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선택한 라이선스의 약관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기계(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저작물에 붙였을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정한 라이선스를 채택했음을 기계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 부분을 말합니다. 이 기계식별코드 부분을 특히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정보공유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에는 채택 라이선스의 종류, 저작물의 제목, 형식, 위치, 제작자, 제작년도 등과 같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에 대한 다양한 '서술 정보'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나. 메타데이터 왜 필요한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이 메타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현재 시맨틱 웹(Semantic Web)의 표준으로 권장되고 있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온라인 저작물에 붙이게 되면 기계(컴퓨터)가 해당 정보를 식별하고 검색해냄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검색엔진에서는 단순히 “‘들국화’라는 글자가 포함된 모든 웹문서를 찾아라”라는 질의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결과들이 검색될 수 있는 반면, 정보공유라이선스 메타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는 검색엔진의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채택한 모든 파일을 찾아라’, ‘제목이 ‘영원히 사랑해’인 음악파일을 찾아라’, ‘저작자가

‘홍길동’인 이미지파일을 찾아라”의 경우처럼 메타데이터의 하위 정보들에 대한 복합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원하는 정보만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강력한 확장검색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메타데이터를 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 메타데이터 삽입 방법

메타데이터를 붙이려면 ‘내게 맞는 라이선스 선택’ 페이지(2. 정보공유라이선스 선택 방법 참조)에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생성된 코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물론 저작자가 라이선스를 채택할 때 이 정보들을 입력하고 이 입력의 결과로 자동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부착하는 것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자신의 저작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정보공유의 취지에서 가능하면 자신의 저작물에 메타데이터를 부착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 주의사항

이 메타데이터는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적용 표시와 함께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의 권리관리정보(저작물,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물의 이용방법과 조건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단 저작자에 의해 붙여진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표시나 메타데이터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채택시 유의사항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가.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접권자만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 또는 그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권접권자만이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어떤 저작물에 채택한다는 것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재산권(또는 저작권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권리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작권자일까요?

하나. 당신이 창작자라면 당신은 저작권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자, 작곡자, 작사자이거나 혹은 스스로 그림을 그렸거나 사진을 찍었거나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글, 곡, 가사, 그림, 사진의 창작자입니다. 창작자는 창작을 완료한 시점에서 당연히 저작권을 취득합니다. 등록절차 따위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단, 당신은 창작 후에 그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외〉 당신의 저작물 창작행위가 어떤 회사, 그 외 법인이나 단체의 고용인으로서 업무상 수행한 경우이고 그 저작물이 당신의 이름이 아닌 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경우라면 당신은 저작권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둘. 당신이 창작자를 고용한 단체나 회사 등 법인이고 창작자의 창작이 업무상 행해지는 것이고 또 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었다면 법인이나 단체인 당신은 저작권자일 수 있습니다.

셋. 자신이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면 당신도 역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나.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표시를 임의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그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의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여 표시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물 하나하나마다 채택해야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특정한 저작물을 일정한 범위에서 자유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작물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개의 저작물에 일괄하여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경우 (가령 어떤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저작물 전부에 대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저작물마다 채택표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용자로서는 그래야 어떤 저작물에 어떤 내용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되어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 주의사항

1. 라이선스 판번호 명시 (1.0 또는 2.0)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채택한 특정판 판번호를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특정한 판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라이선스 채택 당시의 최신판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



2005. 김창작.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표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했다는 표시가 가능한 한 잘 보이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된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 옆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나 여러 개의 저작물에 표시할 경우에는 페이지의 상단 혹은 옆에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정보공유라이선스 배너를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했음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3 장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약관 해설



1. 개요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이는 허락을 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2조).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허락 방법과 조건을 저작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약관의 일종으로, 정보공유연대 IPLeft(www.ipleft.or.kr)가 2004년 10월에 발표한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을 보완한 것입니다.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이들이 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고 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이 약관에 따른 의무를 어긴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2.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주요 내용

가. 약관의 유형과 이름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정보공유라이선스 1.0과 마찬가지로 4가지 유형의 약관으로 나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1.0에서는 4가지 약관의 이름을 '영리·개작허용', '영리허용·개작불허', '영리불허·개작허용', '영리·개작불허'로 하였으나, 이름을 좀더 간단하고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1.0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영리·개작허용	→	허용
영리불허·개작허용	→	영리금지
영리허용·개작불허	→	개작금지
영리·개작 불허	→	영리금지·개작금지

나.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1) 기본 이용 범위 (모든 약관에 공통되는 이용 범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저작물에 채택된 경우
(단, 영리 목적의 이용은 약관의 유형에 따라 다름)**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행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행위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하는 행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에 채택된 경우

실연 : 실연(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방송, 전송하는 행위
음반 : 음반(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
방송 : 방송(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동시중계방송하는 행위

(2) 약관의 유형에 따른 이용 범위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 저작물의 이용범위가 가장 넓은.
-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가능함.
-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할 수 있음.
-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작성·이용할 수 있음.
-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할 수 있음.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금지되고 나머지 이용행위는 모두 허용.

* 영리 목적의 이용이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함.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 2차적 저작물 작성만 금지하고 나머지 저작물 이용행위는 모두 허용.

*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이나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함(예: 소설 '나비부인'을 오페라로 만드는 것)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

- 저작물의 이용범위가 가장 좁음.
- 영리 목적의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 행위는 허용.

다. 계약의 성립과 종료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 따라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적용할 약관을 선택하고,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저작권자가 선택한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 따른 계약은 저작권이 존속하는 동안 유효하며 이용자가 약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즉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적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제2장 3.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 방법'을 참조하세요.

라. 이용자의 의무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모든 약관에 공통되는 의무

(가) 저작인격권 존중의 의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적용하는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격권을 갖는 저작자가 반드시 동일한 자나 단체인 것은 아닙니다).

◆ **공표권**: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는 공표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저작물을 공표하였기 때문입니다.

◆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저작자(저작재산권자가 아님)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저작자가 그의 실

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고 무명으로 공표할 권리도 포함합니다. 만약, 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 저작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한편,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예를 들어, 교육정책상 필요한 경우나 논문의 저자가 너무 많아 한 명의 저자만 기재하고 'OOO 외 10명'으로 성명을 표시하는 경우).

- ◆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또는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류를 정정하는 수준이 아니면, 무단으로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일부분을 삭제하는 행위, 제목을 함부로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동일성유지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예컨대, 교과서에 인용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를 우리말로 고치는 경우).

한편,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약관과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약관은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고 있는데,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원저작물의 수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본질에 관한 변경인 경우(예컨대, 희극을 비극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번역을 하면서 오역이 심하여 원작품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 ◆ **명예훼손적 이용의 금지:**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적 가치가 높은 누드화를 스트립쇼 극장의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나 종교음악을 희극용의 악곡과 함께 연주하는 것 등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라이선스 표시의 의무

◆ 라이선스의 표시

이용자는 이용하는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의 표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저작물이나 복제물에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을 방송, 공연,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표시가 수반되도록 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어느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는 그 표시를 통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원저작물이나 복제물에 부착되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라이선스의 표시 방법은 '제2장 3.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 방법'을 참조하세요.

- ◆ 이용자는 라이선스의 내용이나 표시를 어떤 부분이든 제거,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경우, 또는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이나 표시를 제거, 변경 또는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에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만든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 전체에 반드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원저작물이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이란 사실을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노래는 3번 노래뿐인 경우에는 해당 노래에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라이선스를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하게 어렵거나 현저한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메타데이터(metadata)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메타데이터를 도입하였습니다. 메타데이터

란 데이터의 데이터, 즉 어떤 객체를 서술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 정보공유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에 대한 다양한 서술 정보들(채택 라이선스의 유형, 저작자, 저작물의 종류, URL, 저작년도 등)을 포함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이 메타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현재 시맨틱 웹(Semantic Web)의 표준으로 권장되고 있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를 사용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때 정보공유라이선스 홈페이지(www.freeuse.or.kr)의 라이선스 선택 메뉴에서 저작물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RDF 코드가 생성됩니다. 메타데이터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단지 기계(컴퓨터)가 해당 정보를 식별하고 검색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 부착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메타데이터는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저작물에 대한 더 쉽고 강력한 검색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가능하면 메타데이터를 자신의 저작물에 부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적용 표시와 메타데이터는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의 권리관리정보(저작물,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물의 이용 방법과 조건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나 메타데이터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의 의무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경우, 또는 실연이나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을 함께 이용한 경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실연의 복제물, 음반, 방송물 전체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은 다른 사람이 해당 약관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해 두어야 합니다.

(2) 약관의 유형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

(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앞에서 설명한 '저작인격권 존중', '라이선스 표시',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 의무 이외에 3가지 의무가 추가됩니다.

- ① 이용자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과 동일한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을 이용허락할 의무
- ②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표시를 할 의무
- ③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금지 의무

(나)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앞에서 설명한 '저작인격권 존중', '라이선스 표시',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 의무 이외에 1가지 의무가 추가됩니다.

- ① 원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의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앞에서 설명한 '저작인격권 존중', '라이선스 표시',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 의무 이외에 4가지 의무가 추가됩니다.

- ① 영리 목적의 이용 금지 의무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함)
- ② 이용자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와 동일한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을 이용허락할 의무
- ③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표시를 할 의무
- ④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금지 의무

(라)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 개작금지

앞에서 설명한 '저작인격권 존중', '라이선스 표시',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 의무 이외에 2가지 의무가 추가됩니다.

- ① 영리 목적의 이용 금지 의무(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함)
- ② 원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의무(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마. 정보공유라이선스 1.0과의 관계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이 없어지거나 정보공유라이선스 2.0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발표되기 전에 판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1.0을 적용한 저작물에는 2.0이 적용됩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t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때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적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1.0과 2.0의 차이점은 아래의 '바. 정보공유라이선스 1.0에서 변경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보공유라이선스 1.0에서 변경된 내용

(1) 라이선스의 표시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는 배너를 하나로 통일하고 심볼을 변경하였으며, 메타데이터를 라이선스의 표시 중 하나로 채택하였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표시할 때에는 변경된 배너나 심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권리자나 이용자가 모든 저작물(또는 복제물)에 메타데이터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메타데이터를 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저작물 이용 조건의 변경 또는 철회

정보공유라이선스 1.0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이것을 철회하거나 저작물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라이선스 적용을 철회하거나 저작물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변경이나 철회를 하려면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 따라 이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서 철회나 변경의 의사표시를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변경이나 철회의 효력은 장래

에 대해서만 미칩니다(약관 제13조). 그러나 철회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2차적 저작물, 저작인접물에는 개별적인 통지를 하더라도 철회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자의 의사표시를 믿고 작성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에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을 작성한 자에게 너무 심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보증 및 책임의 부인

정보공유라이선스 1.0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이 타인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도록 규정하였는데(정보공유라이선스 1.0 제7조),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는 저작물에만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하여 라이선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조항을 둘 경우,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채택을 주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내용의 정확성이나,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저작물이 적합하다는 것이나,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 및 책임의 부인 규정을 두더라도,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모르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한편,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려는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과 관계된 경우(예를 들어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소재가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 또는 저작인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의 대상이 되는 원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으로부터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후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집저작물, 저작인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 자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집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2차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저작인접물이 타인의 저작권과 관계된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기 전에 타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4) 판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저작물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때 판번호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여 정보공유라이선스 1.0에서는 판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저작물은 앞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정보공유라이선스 1.0 제8조). 그런데, 판번호가 없는 경우 항상 새로운 판번호가 적용되도록 하면, 이용자는 라이선스의 새로운 판이 발표되었는지를 보고 그에 따른 이용조건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당시에 발표된 최신판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 1.0만 발표되었던 동안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1.0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5)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적용

정보공유라이선스 1.0 '개작 허용'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더 제한적인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정보공유라이선스 1.0과 마찬가지로 2차적 저작물에도 반드시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 저작인접물, 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과 정보공유라이선스

이 부분은 앞의 '바. (3) 보증 및 책임의 부인'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을 이용자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저작인접물이나, 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과 같이 타인의 저작권과 관계된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행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반 제작자 2명이 자신들의 음반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이 2장의 음반에 들어 있는 노래를 이용하여 새로운 편집앨범을 제작하려면 원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조문별 해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약관은 모두 15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기본 이용허락 조건
- 제4조 저작권법 등의 권리
- 제5조 이용허락의 내용
-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제8조 재이용허락
- 제9조 이용자의 라이선스 표시 의무 등
- 제10조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적용 표시 등
- 제11조 기술적 보호조치의 금지
- 제12조 이용허락의 종료
- 제13조 이용허락의 철회 또는 변경
- 제14조 보증 및 책임의 부인
- 제15조 준거법

전문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저작권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라이선스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해설 : 전문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저작권이 정보공유연대 IPLeft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제1조 (목적)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하 '이 라이선스')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범위를 넓히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창작물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저작권자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해설 : 제1조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목적과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

선스는 저작권 제도를 부정하거나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저작권 제도의 틀 안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확대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정보 접근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정의)

※ 해설 : 제2조에서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약관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이고, 제2항은 저작권법에 있는 용어를 참고로 기재한 것입니다. 제2항의 용어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그 의미가 바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 특별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중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로서,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른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말하며, “저작권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을 할 주체를 말하고, “이용자”는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자로서,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접권을 갖는 자의 권리 대상(실연, 음반, 방송물)을 저작권접물로 정의하였습니다(제1항 제4호). 저작권접물에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에는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저작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작권접물’로 보고, ‘저작권’은 저작권접권으로 봅니다.

제3조 (기본 이용허락 조건)

기본 이용허락 조건은 약관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 ① 이 라이선스는 ‘허용’의 판번호 2.0의 라이선스입니다.
- ② ‘허용’ 라이선스는 저작권접권을 인정(저작자 성명 표시, “저작물” 동일성 유지)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으며,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이 허용된 라이선스입니다.
- ③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2)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 ① 이 라이선스는 '영리금지'의 판번호 2.0의 라이선스입니다.
- ② '영리금지' 라이선스는 저작권권을 인정(저작자 성명 표시, 저작물 동일성 유지)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비영리 이용으로 한정한다는 제한사항을 특징으로 하며,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이 허용된 라이선스입니다.
- ③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3)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 ① 이 라이선스는 '개작금지'의 판번호 2.0의 라이선스입니다.
- ② '개작금지' 라이선스는 저작권권 인정(저작자 성명 표시, 저작물 동일성 유지),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라는 제한사항을 특징으로 하며,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 ③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4)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 개작금지

- ① 이 라이선스는 '영리금지·개작금지'의 판번호 2.0의 라이선스입니다.
- ② '영리금지·개작금지' 라이선스는 저작권권 인정(저작자 성명 표시, 저작물 동일성 유지), 영리이용 금지,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라는 제한사항을 특징으로 하는 라이선스입니다.
- ③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 해설 : 각 유형별 라이선스의 명칭과 가장 기본적인 이용허락 조건을 명시하고(제1항, 제2항),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제3항)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제4조 (저작권법 등의 권리)

이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나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 해설 : 제4조는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범위보다 더 좁게 저작권자나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가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6절 '저작권재산권의 제한'에서 규정한 이용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비평이나 연구 등에서 인용하는 것,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은 이 라이선스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라 당연히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리 이용을 금지하는 유형의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약관이 적용된 저작물인 경우에도 이를 영리 목적의 언론기관이 시사보도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4조에 의해 가능하며,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금지하는 유형의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약관이 적용된 저작물인 경우에도, 이를 개인적 이용을 위해 번역, 편곡, 개작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7조, 제33조).

둘째, 저작권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행위만 대상으로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행위만 저작권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4조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라이선스에서 이용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소설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소설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면, 약관 제5조 (이용허락의 내용)에 따라, 소설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이외의 행위 예컨대, "소설을 읽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을 읽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음반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경우, 이용허락되는 범위는 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음반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로 한정되지만, 음반을 방송하는 행위는 이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다만,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방송하면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제4조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축소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라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보한 것 이외에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는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자가 저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저작물에 부착하여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적용하였는데, 이용자

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허락의 내용)

이용허락의 내용은 약관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 ①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없이, 무상으로, 영구히, 모든 매체(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 포함)에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 ‘이용’이란 2차적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를 포함함
 3.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4.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저작인접물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5.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기타 저작권법상의 이용
- ② 제1항의 “저작물”이 실연이고 저작권자가 그 실연의 실연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실연(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방송,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저작물”이 음반이고 저작권자가 그 음반의 음반제작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음반(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 ④ 제1항의 “저작물”이 방송이고 저작권자가 그 방송의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방송(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로 합니다.

(2)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 개작금지

- ①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없이, 무상으로, 영구히, 모든 매체(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 포함)에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3.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저작인접물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4.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된 “저작물”

의 기타 저작권법상의 이용

- ② 제1항의 "저작물"이 실연이고 저작권자가 그 실연의 실연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실연(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방송,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저작물"이 음반이고 저작권자가 그 음반의 음반제작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음반(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 ④ 제1항의 "저작물"이 방송이고 저작권자가 그 방송의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방송(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로 합니다.

※ 해설 :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 따라 이용이 허락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앞의 '2. 나.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이용자는 "저작물"에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이 허용되는 약관인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용의 목적이나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해설 :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인격권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용자는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 존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2. 라. 이용자의 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이용허락의 제한은 약관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동일조건이용허락)

- ① 이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 포함, 이하 같다)는 이 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② 2차적 저작물 작성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 라이선스와 다른 조건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영리이용금지 및 동일조건이용허락)

-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대

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이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 포함, 이하 같다)는 이 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③ 2차적 저작물 작성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 라이선스와 다른 조건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개작금지)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원하는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4)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 개작금지

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영리이용금지, 개작금지)

-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대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원하는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해설 : 이 조항은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이 허용되는 2개의 약관 즉, '허용'과 '영리금지'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가 이를 공표할 경우 원저작물에 적용된 약관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에 반드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저작물에 적용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다른 라이선스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 금지되는 2개의 약관 즉, '영리금지 · 개작금지'와 '개작금지'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야 합니다.

영리 이용이 금지된 약관의 경우,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의 이용이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또는 영리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을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한다면 영리 이용에 해당합니다. 혹은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업적 포털 사이트나 방송국과 같은 영리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영리 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업적 배너가 붙어있지만 비영리 단체 혹은 개인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경우, 상업적 포털 사이트 내에 있지만 비영리 동호회에서 이용하는 경우,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 등 영리적 성격이 간접적인 것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8조 (재이용허락)

이용자가 “저작물”, “저작물”을 이용한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이용자로부터 배포 또는 전송받은 자에게 이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으며,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제3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 라이선스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은 ‘이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 해설 :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것에 불과한 이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자도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라이선스 표시 의무 등)

-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물” 또는 복제물 (음반, 방송 등 포함)에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본 항에 의한 표시를 이 라이선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로고 또는 심볼(또는 로고와 심볼의 결합)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에도 이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에는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내용 및 표시를 어떠한 부분이든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 해설 : 제1항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이용하는 경우의 라이선스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메타데이터에 관한 것으로 이용자가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작권자가 이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전송한 경우 이용자가 메타데이터를 고의로 제거, 변경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라이선스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 종료하게 되므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반드시 라이선스 표시가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표시하는 방법은 '제2장 3.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적용 표시 등)

-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②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③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당시에 배포된 최신 판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 1.0만 배포된 당시에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됩니다.

※ 해설 : 제1항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메타데이터에 관한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 이용 허락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비로소 이용자들이 알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적용 표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선스 적용의 표시는 앞의 '제2장 3.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면서 판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면서 판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당시에 발표된 최신판 약관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 1.0만 발표되었던 기간 동안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1.0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기술적 보호 조치의 금지)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 해설 :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한 경우, 또는 실연이나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을 함께 이용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실연의 복제물, 음반, 방송물 전체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해 두어야 합니다.

제12조 (이용허락의 종료)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이나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 라이선스에 의한 이용허락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모든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한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과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한 종료되지 않습니다.

※ 해설 :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어기거나 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 자료부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을 배포받은 제3자는 이용허락이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앞의 '2. 라. 이용자의 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이용허락의 철회 또는 변경)

-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다른 종류의 라이선스나 다른 조건에 의한 이용허락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나 변경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② 이미 성립된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는 그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철회나 변경의 의사표시는 개별적으로 통지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개별적인 통지에 의해서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해설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채택한 후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철회나 변경의 의사표시를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개별 통지하더라도 이미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에는 철회나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철회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2차적 저작물, 저작인접물에 대해서는 철회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자의 의사표시를 믿고 작성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에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을 작성한 자에게 너무 심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4조 (보증 및 책임의 부인)

- ① 저작권자는 다음 각호의 보증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제3자의 권리침해를 하지 않음 (편집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재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원저작권자로 부터 이 라이선스 적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저작물" 내용의 정확성
 3.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저작물"이 적합하다는 것 등
- ② 이 라이선스의 작성 또는 배포자는 이 라이선스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해설 : 제1항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 권리자의 보증과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나(제1호), 저작물 내용의 정확성(제2호) 또는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저작물이 적합하다는 것(제3호)을 보증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저작권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단, 타인의 저작권과 관계가 있는 저작물(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려는 자는 그 타인에게 라이선스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에 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에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집저작물, 저작인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 자는 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면책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편집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2차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저작인접물이 타인의 저작권과 관계된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기 전에 타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제2항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작성한 단체(정보공유연대 IPLet)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배포한 제3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준거법)

이 라이선스는 한국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 해설 : 정보공유라이선스 약관 내용의 해석이나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 등은 한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제 4 장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약관 전문



1.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저작권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라이선스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제1조 (목적)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이하, '이 라이선스'라 한다)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범위를 넓히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창작물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저작권자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라이선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물이란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
2. 저작권자: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권자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자로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3. 이용자: 이 라이선스에서 이용자란 이 라이선스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4.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 음반, 방송을 '저작인접물'이라 합니다. 저작인접물이 이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경우,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은 저작인접물로,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봅니다.

② 다음 각호의 용어는 저작권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정의된 용어로,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로 기재한 것이며, 앞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면 그에 따릅니다.

1.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외)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3.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말합니다.
4.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을 말합니다.
5. 편집물: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6.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데이터베이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합니다.

9.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송: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복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서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2. 배포: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공연: 저작물을 공연·연주·가창·연설·상연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14. 실연: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설 그 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5. 방송: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제3조 (기본 이용허락 조건)

- ① 이 라이선스는 '허용'의 판번호 2.0의 라이선스입니다.
- ② '허용' 라이선스는 저작권자를 인정(저작자 성명 표시, "저작물" 동일성 유지)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으며,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이 허용된 라이선스입니다.
- ③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제4조 (저작권법 등의 권리)

이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나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허락의 내용)

- ①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없이, 무상으로, 영구히, 모든 매체(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 포함)에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 '이용'이란 2차적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를 포함함

3.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4.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저작인접물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5.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기타 저작권법상의 이용
- ② 제1항의 “저작물”이 실연이고 저작권자가 그 실연의 실연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실연(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방송,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저작물”이 음반이고 저작권자가 그 음반의 음반제작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음반(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 ④ 제1항의 “저작물”이 방송이고 저작권자가 그 방송의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방송(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로 합니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이용자는 “저작물”에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하며, 2차적 저작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용의 목적이나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동일조건이용허락)

- ① 이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 포함, 이하 같다)는 이 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 2차적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② 2차적 저작물 작성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 라이선스와 다른 조건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재이용허락)

이용자가 “저작물”,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이용자로부터 배포 또는 전송받은 자에게 이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으며,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제3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 라이선스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은 ‘이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9조 (이용자의 라이선스 표시 의무 등)

-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물” 또는 복제물(음반, 방송 등 포함)에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본 항에 의한 표시를 이 라이선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로고

또는 심볼(또는 로고와 심볼의 결합)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하여 이용한 경우에도 이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에는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내용 및 표시를 어떠한 부분이든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적용 표시 등)

-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②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③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당시에 배포된 최신 판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 1.0만 배포된 당시에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됩니다.

제11조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이용허락의 종료)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이나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 라이선스에 의한 이용허락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모든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과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한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허락의 철회 또는 변경)

-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다른 종류의 라이선스나 다른 조건에 의한 이용허락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나 변경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② 이미 성립된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는 그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철회나 변경의 의사표시는 개별적으로 통지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개별적인 통지에 의해서도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보증 및 책임의 부인)

① 저작권자는 다음 각호의 보증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제3자의 권리침해를 하지 않음 (편집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재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원저작권자로부터 이 라이선스 적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저작물” 내용의 정확성
3.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저작물”이 적합하다는 것 등

② 이 라이선스의 작성 또는 배포자는 이 라이선스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준거법)

이 라이선스는 한국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2.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저작권은 정보공유연대 IPLet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라이선스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제1조 (목적)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이하, '이 라이선스'라 한다)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범위를 넓히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창작물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저작권자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라이선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물이란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
2. 저작권자: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권자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자로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3. 이용자: 이 라이선스에서 이용자인 이 라이선스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4.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 음반, 방송을 '저작인접물'이라 합니다. 저작인접물이 이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경우,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은 저작인접물로,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봅니다.

② 다음 각호의 용어는 저작권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정의된 용어로,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로 기재한 것이며, 앞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면 그에 따릅니다.

1.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외)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3.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말합니다.
4.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을 말합니다.
5. 편집물: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6.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데이터베이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합니다.

9.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송: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복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서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2. 배포: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공연: 저작물을 공연·연주·가창·연술·상연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와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14. 실연: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5. 방송: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제3조 (기본 이용허락 조건)

- ① 이 라이선스는 '영리금지'의 판번호 2.0의 라이선스입니다.
- ② '영리금지' 라이선스는 저작권자를 인정(저작자 성명 표시, 저작물 동일성 유지)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비영리 이용으로 한정한다는 제한사항을 특징으로 하며,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이 허용된 라이선스입니다.
- ③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제4조 (저작권법 등의 권리)

이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나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허락의 내용)

- ①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없이, 무상으로, 영구히, 모든 매체(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 포함)에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 '이용'이란 2차적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를 포함함

3.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4.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저작인접물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5.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기타 저작권법상의 이용
- ② 제1항의 “저작물”이 실연이고 저작권자가 그 실연의 실연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실연(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방송,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저작물”이 음반이고 저작권자가 그 음반의 음반제작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음반(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 ④ 제1항의 “저작물”이 방송이고 저작권자가 그 방송의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방송(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로 합니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이용자는 “저작물”에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하며, 2차적 저작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용의 목적이거나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영리이용금지 및 동일조건이용허락)

-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대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이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 포함, 이하 같다)는 이 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③ 2차적 저작물 작성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 라이선스와 다른 조건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재이용허락)

이용자가 “저작물”,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이용자로부터 배포 또는 전송받은 자에게 이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으며,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제3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 라이선스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은 ‘이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9조 (이용자의 라이선스 표시 의무 등)

-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

물" 또는 복제물(음반, 방송 등 포함)에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본 항에 의한 표시를 이 라이선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로고 또는 심볼(또는 로고와 심볼의 결합)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하여 이용한 경우에도 이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에는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내용 및 표시를 어떠한 부분이든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적용 표시 등)

-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②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③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당시에 배포된 최신 판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 1.0만 배포된 당시에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됩니다.

제11조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이용허락의 종료)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이나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 라이선스에 의한 이용허락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모든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과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한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허락의 철회 또는 변경)

-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다른 종류의 라이선스나 다른 조건에 의한 이용허락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나 변경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② 이미 성립된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는 그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철회나 변경의 의사표시는 개별적으로 동지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개별적인 봉지에 의해서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보증 및 책임의 부인)

① 저작권자는 다음 각호의 보증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제3자의 권리침해를 하지 않음 (편집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재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원저작권자로부터 이 라이선스 적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저작물” 내용의 정확성

3.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저작물”이 적합하다는 것 등

② 이 라이선스의 작성 또는 배포자는 이 라이선스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준거법)

이 라이선스는 한국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3.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저작권은 정보공유연대 IPLeff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라이선스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제1조 (목적)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이하, '이 라이선스'라 한다)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범위를 넓히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창작물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저작권자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라이선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물이란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
2. 저작권자: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권자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자로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3. 이용자: 이 라이선스에서 이용자란 이 라이선스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4.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 음반, 방송을 '저작인접물'이라 합니다. 저작인접물이 이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경우,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은 저작인접물로,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봅니다.

② 다음 각호의 용어는 저작권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정의된 용어로,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로 기재한 것이며, 앞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면 그에 따릅니다.

1.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외)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3.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말합니다.
4.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을 말합니다.
5. 편집물: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6.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데이터베이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합니다.

9.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송: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복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서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2. 배포: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공연: 저작물을 공연·연주·가창·연설·상연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14. 실연: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설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5. 방송: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제3조 (기본 이용허락 조건)

- ① 이 라이선스는 '개작금지'의 판번호 2.0의 라이선스입니다.
- ② '개작금지' 라이선스는 저작권권 인정(저작자 성명 표시, 저작물 동일성 유지),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라는 제한사항을 특징으로 하며,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 ③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제4조 (저작권법 등의 권리)

이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나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허락의 내용)

- ①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없이, 무상으로, 영구히, 모든 매체(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 포함)에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3.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저작인접물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4.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기타 저작권법상의 이용

② 제1항의 “저작물”이 실연이고 저작권자가 그 실연의 실연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실연(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방송,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저작물”이 음반이고 저작권자가 그 음반의 음반제작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음반(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저작물”이 방송이고 저작권자가 그 방송의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방송(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로 합니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이용자는 “저작물”에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용의 목적이나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개작금지)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원하는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재이용허락)

이용자가 “저작물”, “저작물”을 이용한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이용자로부터 배포 또는 전송받은 자에게 이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으며,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제3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 라이선스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은 ‘이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9조 (이용자의 라이선스 표시 의무 등)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물” 또는 복제물(음반, 방송 등 포함)에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본 항에 의한 표시를 이 라이선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로고 또는 심볼(또는 로고와 심볼의 결합)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에도 이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에는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내용 및 표시를 어떠한 부분이라도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적용 표시 등)

-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②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③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당시에 배포된 최신 판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 1.0만 배포된 당시에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됩니다.

제11조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이용허락의 종료)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이나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 라이선스에 의한 이용허락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모든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한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과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한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허락의 철회 또는 변경)

-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다른 종류의 라이선스나 다른 조건에 의한 이용허락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나 변경은 미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② 이미 성립된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는 그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철회나 변경의 의사표시는 개별적으로 통지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개별적인 통지에 의해서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보증 및 책임의 부인)

- ① 저작권자는 다음 각호의 보증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제3자의 권리침해를 하지 않음 (편집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재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원저작권자로부터 이 라이선스

적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저작물” 내용의 정확성

3.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저작물”이 적합하다는 것 등

② 이 라이선스의 작성 또는 배포자는 이 라이선스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담보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준거법)

이 라이선스는 한국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4.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 개작금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저작권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라이선스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제1조 (목적)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 (이하, '이 라이선스'라 한다)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범위를 넓히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창작물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저작권자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라이선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물이란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
2. 저작권자: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권자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자로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3. 이용자: 이 라이선스에서 이용자란 이 라이선스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4.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 음반, 방송을 '저작인접물'이라 합니다. 저작인접물이 이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경우,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은 저작인접물로,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봅니다.

② 다음 각호의 용어는 저작권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정의된 용어로,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로 기재한 것이며, 앞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면 그에 따릅니다.

1.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외)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3.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말합니다.
4.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을 말합니다.
5. 편집물: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6.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데이터베이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합니다.

9.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송: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복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2. 배포: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공연: 저작물을 공연·연주·가창·연설·상연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14. 실연: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설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5. 방송: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제3조 (기본 이용허락 조건)

- ① 이 라이선스는 '영리금지·개작금지'의 판번호 2.0의 라이선스입니다.
- ② '영리금지·개작금지' 라이선스는 저작권권 인정(저작자 성명 표시, 저작물 동일성 유지), 영리이용 금지,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라는 제한사항을 특징으로 하는 라이선스입니다.
- ③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제4조 (저작권법 등의 권리)

이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나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허락의 내용)

- ①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없이, 무상으로, 영구히, 모든 매체(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 포함)에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3.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저작인접물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4.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기타 저작권법상의 이용
- ② 제1항의 “저작물”이 실연이고 저작권자가 그 실연의 실연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실연(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방송,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저작물”이 음반이고 저작권자가 그 음반의 음반제작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음반(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 ④ 제1항의 “저작물”이 방송이고 저작권자가 그 방송의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방송(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로 합니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이용자는 “저작물”에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용의 목적이나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영리이용금지, 개작금지)

-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대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원하는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재이용허락)

이용자가 “저작물”, “저작물”을 이용한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이용자로부터 배포 또는 전송받은 자에게 이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으며,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제3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 라이선스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은 ‘이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9조 (이용자의 라이선스 표시 의무 등)

-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물” 또는 복제물(음반, 방송 등 포함)에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본 항에 의한 표시를 이 라이선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로고 또는 심볼(또는 로고와 심볼의 결합)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에도 이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에는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

이전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내용 및 표시를 어떠한 부분이라도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적용 표시 등)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③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당시에 배포된 최신 판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 1.0만 배포된 당시에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됩니다.

제11조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이용허락의 종료)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이나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 라이선스에 의한 이용허락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모든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한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과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한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허락의 철회 또는 변경)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다른 종류의 라이선스나 다른 조건에 의한 이용허락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나 변경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② 이미 성립된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는 그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철회나 변경의 의사표시는 개별적으로 통지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개별적인 통지에 의해서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보증 및 책임의 부인)

① 저작권자는 다음 각호의 보증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제3자의 권리침해를 하지 않음 (편집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재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원저작권자로부터 이 라이선스 적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저작물” 내용의 정확성

3.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저작물”이 적합하다는 것 등

② 이 라이선스의 작성 또는 배포자는 이 라이선스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담보 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준거법)

이 라이선스는 한국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정보공유연대 ILeft 소개

정보공유연대 ILeft는 1999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정보공유연대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인해 사회 계층간, 국가간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을 우려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정보독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정보공유의 미덕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Left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입장발표 및 정책 생산, 자료의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지적재산권과 카피레프트 운동에 대해 논쟁적인 토론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 ILeft는 회원소통의 수단으로 공개메일링리스트 ip@list.jinbo.net 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공유연대 ILeft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e-mail 주소를 넣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전화번호: 02-717-9551
이 메 일: ipleft@jinbo.net

정보 라이선스 2.0 해설서

2005년 8월 10일 초판 발행

발행인 정보공유연대 IPLeft

발행처 정보공유연대 IPLeft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홈페이지 : www.ipleft.or.kr

이메일 : ipleft@jinbo.net

정보 라이선스 2.0 해설서



정보공유연대 IPLett